# 2024년 거창 산양삼 가공제품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

거창 산양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활성산양삼과 임·농특산물을 융합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로 거창 산양삼의 제품 다각화 및 가치향상을 유도하고자 함.

## ❑ 근　　거 : 「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」 제5조

## ❑ 목　　적

○ 급변하는 식품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는 산양삼 가공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와 임업 경쟁력 강화

○ 활성 산양삼과 임·농특산물 등을 융합 활용한 가공제품 상품화를 통해 거창 산양삼의 가치향상과 항노화 6차 산업 기반 구축

## ❑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거창 산양삼 가공제품 개발 지원사업(시범사업)

※「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」제6조2호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

○ 사 업 비 : 60,000천원 (군비 42,000, 자부담 18,000)

○ 보조비율 : 군비 70%, 자부담 30%

○ 사업기간 : 2024. 3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3 ~ 6개소

- 건당 최대 보조금액 14,000천원(총사업비 20,000천원 초과 시 자부담)
- 사업 신청량이 많고 심의결과, 지원이 타당할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

○ 사업대상 : 산양삼을 직접 생산하는 임업인(업체) 또는 생산자단체

- (개인)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한 자로서 최초 신고일 기준 5년 이상인 임업인
- (단체)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4조제2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로서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조합원(법인회원) 중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한 임업이 3명 이상 포함

※ 군비 자체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

○ 사업내용 : 거창 산양삼을 가공하여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

-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, 시제품 브랜드 포장재 개발 등
- 소비시장 맞춤형 제품개발(신소재 적용, 가공방식 개선 등)
- 개발에 필요한 산양삼 구입은 불가, 기타 재료는 구입 가능

※ 원료는 거창 산양삼을 반드시 이용하고 상품에 산양삼 조성비 5%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, 산양삼 함량 변동 가능

※ (우대사항) 산양삼을 소재로 임·농특산물을 활용한 복합제품 생산, 판매를 하고 있는 임업인(업체) 또는 생산자단체

## ❑ 추진방법

○ 신청·접수 : 공모를 통한 신청 및 접수

○ 1차 심사 : 서류심사를 통한 사업계획 적정성 및 적격자 검증

○ 2차 심사 : 신청자 면접 심사 및 대상자 선정(신청자 초과 등 필요시)

○ 평가내용

| 구분 | 평가항목 | 평가지표 | 배점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**합계** | | | **100** | |
| 1 | 사업취지, 이해도 | 사업목적과 취지의 이해도 | 15 | |
| 2 |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등 | 운영실적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| 30 | |
| 3 | 규모화, 전문화 가능성 | 규모화, 전문조직화 가능 여부 | 10 | |
| 4 | 관내 농(임)업 생산과의 연계성 | 원재료의 관내 생산여부, 지역 내 파급효과 | 20 | |
| 5 | 계획의 적정성 |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비 내용의 적정성 | 15 | |
| 6 | 종합평가 | 발전가능성 등 | 10 | |

## ❑ 사업일정 및 향후계획

○ 2024. 3월 :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공고

○ 2024. 3월 ~ 4월 : 대상자 선정,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

○ 2024. 4월 ~ 12월 : 사업완료 및 정산, 성과보고

| 사업공고 및 접수 | ⇨ | 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 | ⇨ |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| ⇨ | 사업시행 및 완료 | ⇨ | 보조금 지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접수 | | 자체 심의 및 대상자 선정 | | 확정통지,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| | 사업시행, 완료 및 정산보고 | | 완료확인, 보조금 지급 |
| **3월** | | **3월 ~ 4월** | | **4월중** | | **4월 ~ 11월** | | **4월 ~ 12월** |